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용산구 제2선거구, 노식래 위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도시재생지원기관의 수행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

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

도시재생지원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.

○ 2019년 8월 27일

상위법인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되어  
총괄사업관리자 및 혁신지구, 인정사업 등 신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
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.

이에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 
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실행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 
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 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 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